General Conditions of Purchase of EMS-CHEMIE (Korea) Ltd.

1. 범위

이하 구매 계약 일반 조건(“GCP로 약칭”)이 쌍방간에, 즉 EMS-CHEMIE (한국)유한 회사와 제삼방 (“협력사)간에 모든 상품 공급과 서비스 제공의 계약에 적용한다.이 GCP 사항들은 완전한 견적에 대한 요구,견적, 그리고 주문서와 당사랑 협력사간에 개별 계약 내용으로 구성된다. 협력사 일반 계약 청구 사항이나, 계약 조건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협력사와의 상업적인 통신 내용이(상업 문서, 문서, 이메일, 견적서, 주문서, 납품 서류, 인보이스 확인서) 일반 계약 요구나 계약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에, 당사가 이 통신 내용들을 반대하지 않더라도 이 내용이 당사랑 협력사간 관계에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

2. 계약의 체결

공급 계약은 당사가 발주서를 발행하고 협력사가 근무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서명으로 주문 승낙을 확인한 후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근무일 5일내에 주문 승낙 확인이 없는 경우에 계약서위에 제기된 조건으로 주문 승낙된 것으로 간주한다.계약의 모든 수정과 보완은 당사의 문서가 있을 경우에만 유효한다. 협력사가 제공하는 견적서의 세부 사항이 주문서에 중복으로 언급된 경우에만 계약 내용으로 포함된다.협력사 제공하는 견적이 구속력이 있다.당사의 주문과 그의 관련된 상업적,기술적인 세부 정보가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협력사가 당사의 문서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거래에 대하여 언급을 할 수 있다.

협력사가 계약된 서비스 범위내에서 당사가 요구하는 합리적인 변경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변경으로 인하여 재료비가 크게 변화가 생길 경우에 협력사 요구에 의해서 당사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비용 조절을 해줄 수 있다. 협력사가 변경 통보를 받는 근무일 5일내에 비용 변경 청구를 제출해야 한다.규정 기간에 서류적인 청구가 없으면 비용 조절이 불가능하다.

3. 가격

주문서에 있는 가격이 고정가이면 구속력이 있다.법정 부가세는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납품 조건이 인코텀즈를 기준으로 한다.가격 변동과 최저가는 당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그의 동의의 범위내에서만 구속력이 있다.

4. 인보이스,문서 발행 및 대금 지불 조건

인보이스가 납품별로 작성되어야 하고 당사의 주문 번호,참조 번호와 관련 회사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당사가 주문서에 요구하는 문서, 예를 들어 검사 보고서,검사 계획 그리고 인증 서류와 기술 문서등을 수령한 후에야 납품을 이행할 수 있다.
이 문서들은 협력사가 10년 이상 보관할 것이고 당사가 추가적인 비용 없이 이들을 조회할 수 있다. 당사가 이러한 문서들을 다 수령할 때까지 잔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물품 대금은 계약이 정확히 이행되고 가격과 산정이 정확한 경우에 지급될 것이다.남품이 부정확한 경우에 당사는 남품이 정확하게 이행될 때까지 적절한 금액의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운송 비용과 포장 비용은 별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인보이스가 남품과 동시에 제시되지 않고, 별도로 송부되어야 한다. 당사의 대금 지급과 이행이 납품의 인수와 계약 이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 납품일과 기한

납품 시간은 구속력이 있으며 협력사가 이를 기준으로 한다.물품이 규정된 기간에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이를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협력사는 납품 지연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당사에 통지해야 한다. 요구하는 납품 시간/기한,그리고 그 이후 연장 허가된 남품 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당사는 지연된 납품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당사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보류된다. 협력사의 발송 지연의 결과로 발생한 보통 화물/속달 화물과 같은 운송료의 차이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납품하는데 초과 정박 요금이 납품일전에 당사에 통보되어져야 한다.

6. 물량

주문서에서 확정된 수량은 준수되어야 한다.특정 거래의 경우 통관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분할 납품의 경우 당사의 문서상 명시적으로 요구했던 범위내에만 이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수량 초과 납품의 경우에 당사가, 초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으로, 협력사에 처분을 맡길 권리를 보류하며, 수량 부족 납품의 경우 납품의 100% 이행까지 요구한다.

7. 물품의 인수 및 검사

물품의 대금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 물품을 검사한 결과를 근거로 지급된다.물품의 수량과 품질에 대한 더 상세한 검사는 통상적으로 납품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지므로, 당사의 대금 지급이 납품 수량과 품질에 대한 인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물품의 검사와 대금 지급 이후에도 당사는 모든 법적인 권리를 그대로 보류한다. 이 것은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주문과 일치하지 않거나 물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필요 샘플과 시험등에 소요된 비용은 협력사가 부담해야 한다.

8. 품질

협력사는 계약의 내용을 완벽히 준수한 납품,좋은 원자재의 사용,의도된 효용에 적합한 물품의 우수한 상태를 보증한다.당사는 불만족스런 납품으로 협력사에게 처분을 맡기고 완벽한 대체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납품 대부분에 대해,합의된 품질에 대하여 즉시간으로 검사가 수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여,협력사는 주문을 수락함으로써, 클레임 제기 기한에 상관없이 하자 보고서를 받아들일 것임에 동의한다;이것은 잠재 하자와 관련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당사는 품질 보증 클레임 법율에서 예정한 불만제기 기한의 단축을 인정하지 않는다.어떤한 경우에도 당사는 대체 납품 청구권이나 대금감액 청구권,손해 배상 청구권을 보유한다.또한, 당사가 대체 납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협력사가 완벽한 상태의 대체 물품을 납품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혹은 대체 납품,대금 감액,손해 배상금과 관련된 상황이 법적 구속력 있는 방식으로 해결될 때까지 당사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9. 포장,운송,보험

충분하지 않은 포장이나 운송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물품의 손실과 손상은 공급자의 책임이다.협력사가(인코텀즈에 따라) 운송에 책임이 있다면,운송으로 인한 하자는 공급자의 책임이다.위험한 물품은 유효한 관련 법률에 따라서 포장되고 표시가 부착되어야 하며,그와 관련된 물질안전 데이터 자료가 물품과 함께 인도되어야 한다.위험한 물품의 분류 또는 "비위험 물질"표시가 납품서상에 기재되어야 한다.위험의 이전은 유효한 관련 인코텀즈에 따른다.

10. 발송 조건

각 납품마다 납품서가 함께 발송되어야 하며,이 납품서에는 당사의 주문 번호와 참조 번호,바이어,물품에 대한 명세,순중량과 총중량,정확한 유닛의 개수가 기재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세 정보가 누락된 경우 납품 인수가 거부될 수 있다. 분할 납품과 잔여 납품의 경우 이러한 상세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 납품서, 선하 증권, 첨부 서류들에는 적어도 당사의 주문 번호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기차로 운송 납품하는 경우에 구매 부서는 물품 상세 설명, 당사 주문 번호, 발송 날짜와 순중량과 총중량이 기재되어 있는 운송장 복사본이 필요하다.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전송). 그 외에 다른 설명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물품이 발송되어야 한다.

- 우편물 납품: 우편 요금 미리 지급됨, 주문서에 있는 주소로 발송
- 열차 납품: 주문서에 있는 목적지로 발송
- 8 a.m.에서 4 p.m. 까지의 도로 운송 납품

이상 조건을 위반을 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협력사가 부담해야 한다.

11. 안전 규정

협력사가 당사의 계약 내용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법칙과 안전 규정,그리고 EMS쪽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2. 공급 중단

납품중에 있는 물품이 생산 중단할 경우에, 당사가 문제 있는 납품에 대하여 최종 대체 발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사가 최소 육(6)개월이상 기간으로 문서를 통해서 당사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13. 고지 의무

제품이나 제조 공정의 변경뿐만 아니고 공급자의 변경,생산 장소의 변경도 사전에 적절한 시기에 통지 되어야 한다.

14. 법적인 권리 보호

협력사는 자신의 공급하는 물품이 어떠한 상업적 보호권과 기타 법적 조항도 위반하지 않고, 물품 사용과 제3자 전매와 관련해 당사에 대한 어떠한 클레임도 발생하지 않게 할 책임이 있다. 제3자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협력사는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법적 분쟁에서 당사를 지원하고 대표한다.

15. 서류/도면

도면,비품,시험 및 제조 관련 규정,샘플과 공구를 비롯해 공급자에게 맡겨졌던 모든 서류들은 당사 주문의 일부이면 공급자의 주문 승낙과 동시에 구속력을 갖는다.이 서류들은 당사의 재산이고 당사의 서명 허가 없이 복사되거나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다.이 서류들은 당사의 첫 요청이 있을 때 또는 물품의 납품과 동시에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당사에 반환되어야 한다. 이 의무는 거래 관계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16. 하도급

하도급,즉 당사의 주문을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는 당사의 서명 동의가 없는 한 금지된다.이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당사는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비용에 대한 책임 없이 협력사 납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당사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보류된다.

17. 청구권의 상계 및 양도

당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협력사는 당사에 대하여 제기한 기존의 청구권을 양도할 수 없고, 당사가 제기한 청구권을 상계할 수 없다.

18. QM-시스템

제품의 품질 수준에 대한 보장은 공급자의 책임이다.이를 위해 공급자는 DIN ISO 9001에 따라 제3자. 인증 품질 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지속적인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서 표준 ISO 14001과 ISO/TS 16949의 요구 조건들이 실행되어야 한다.

19. 법률/법칙 준수

협력사는 모든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랑 법칙을 지켜야 한다.(적용할 수 있는 수출 통제과 제재 법률 포함). 당사는 협력사가 국제적으로 승인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최저 표준,국제 노동 기관(ILO)의 국제 노동 표준, 그리고 구매자 회사의 운영 규칙에 대하여 수정 변경 내용을 실시간 주의했으면 한다. 이상 규정들을 www.ems-group.com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

20. 재판 장소 및 적용 법률

본 구매 계약 일반 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계약상의 모든 분쟁은 EMS-CHEMIE (한국)주소지의 관할 권한 있는 법원을 통해서만 해결한다. EMS는 등록된 협력사 사무실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국제 상품 거래 계약(CISG)에 관련 UN 조약을 제외하여 한국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